

第24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10.5.17. ~ 5.1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4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개회식 49
- II.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1
- III.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57
- IV. 부 록
 - 1. 의사일정안 63
 - 2.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금에 관한조례안 65
 -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7
 - 4. 조례심사보고서 8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5월 17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40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관종수)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관종수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5월 17일 (월요일) 11시 03분

議事日程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박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
겠습니다.

● 의사과장 김석환

의사과장 김석환입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와 안건 접수 상황
및 도의회 안건처리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
한 사항입니다.

[제240회-제1차 본회의]

2010년 5월 7일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10일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4월 23일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청주 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지급기간은 2012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고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

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걱정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4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걱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회의 산회 후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하겠습니다.

5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
금에 관한 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동 제도의 도입을 권고해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금년도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 제정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

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도민도 모두 해당되며 신고 대상 부조리 행위의 범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을 하는 행위이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도 이용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분공개 금지 등 부조리 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위촉 위원 3명을 포

[제240회-제1차 본회의]

합한 7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신고유형에 따라 금품 향응은 수수금액의 10배까지, 부당이득 및 교육청의 재정손실 신고는 추정 또는 환수액의 20%와 10%까지, 알선 청탁의 대가인 금품 향응 수수의 경우는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알선 청탁 행위 신고의 경우는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금지급도 가능하며 허위 신고, 이미 신고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외부기관에서 수사, 조사, 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매체 등에서 이미 공개되어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걱정수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걱정수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자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으로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 회 사무처로 변경하고 그 소속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자 하며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을 2,905명에서 2,911명으로 변경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에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추가하며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존치가 중복되는 7~8월 2개월간은 의사국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박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견

(11시 14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견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는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상일 위원님과 정무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제240회-제1차 본회의]

○출석위원 : 5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성영용, 이상일, 정무.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정일용,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5월 18일 (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
금에 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
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대리 김부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익

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
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
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님께
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교
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공

[제240회-제2차 본회의]

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5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5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는바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상의 지급대상을 정하고 공익신고 기한 및 신고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 및 신분미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보상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구체화하였고 보상의 지급제한

대상과 잘못 지급된 보상에 대한 환수규정을 명시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안 제2조 1호를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장이 임용한 계약직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전면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일반도민을”를 “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허위 및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선량한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일과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

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조직 명칭과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18명으로 변함이 없으며 정원관리 기관 명칭과 정원을 종전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7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905명에서 2,91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정원관리 단위기관에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추가 명시하였고 교육위원회의 경과조치와 동 법률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써 별 다른 문제점이 없고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대리 김부웅

이상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2건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40회-제2차 본회의]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폐회)

0 출석위원 : 4명

부의장 김부용,
위원 성영용,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정일용,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흙, 시설과장 박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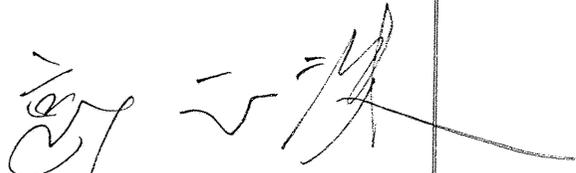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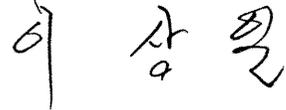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10. 5.

의 장 곽 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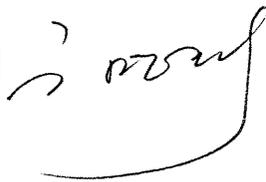
위 원 이 상 일



위 원 정 무



의사국장 구 명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240 회)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5월 7일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0-1
----------	-------

제출연월일 : 2010. 5.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 대상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3조)
- 1)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3)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나.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정함 (안 제4조)
- 1)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다.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가능 (안 제5조)

라.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공개 금지
(안 제6조)

마.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내지 제10조)

- 1) 구성 : 위원장(부교육감) 포함 7명 (위촉위원 3명, 당연직 위원 4명)
- 2)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4) 위원이 신고내용의 당사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

바. 보상금의 지급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다음 기준으로 함 (안 제11조)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백만원 이내

사.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안 제12조 및 제13조)

- 1)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2)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도 가능

아. 보상금 지급 제외 (안 제14조)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 2)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3)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보상금 소요액 추정 후 추경 또는 본예산('11년) 반영

나.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0. 4. 9. ~ 4. 28.

나)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장이 임용한 계약직원을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일반도민을 말한다.
4. "부조리행위"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 신고를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제4조(공익신고 기한)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공익신고 방법 등) ① 공익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교육청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사항 중 신고자 또는 부조리행위 공무원등의 인적사항, 부조리행위 등의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부조리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

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부조리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위원을 징계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위원은 3명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하고,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공무원등 및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공익신고 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제15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백만원 이내

2. 신고금액의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2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24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5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2
----------	-------

제출연월일 : 2010. 5.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을 변경(안 제2조)

1)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 변경 및 정원의 총수를 정함(안 제2조제1호)
교육위원회 의사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7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05명 ⇒ 2,911명(안 제2조제2호)

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추가(안 제4조)

-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다.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7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라.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13명⇒7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과 같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충청북도의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10.3.29.~4.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없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이하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라 한다) : 7명

제2조제2호 중 “2,905명”을 “2,911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3명”을 “7명”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1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교육위원회 의사국 : 별도 조례로 정한다.</u></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905명</u></p> <p>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p> <p>.....</p> <p>.....</p> <p>.....</p> <p>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이하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라 한다) : 7명</p> <p>2.</p> <p>..... : <u>2,911명</u></p> <p>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u>충청북도의회 사무처</u>,</p> <p>.....</p> <p>.....</p> <p>.....</p> <p>.....</p>

관계법령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2010.2.26. 법률 제10046호)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부칙 <제8069호, 2006.12.20.>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법예고 2010.3.12)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학교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9>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 4)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5. 18.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5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5월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5월 17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대상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3조)
 -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정함 (안 제4조)
 -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가능 (안 제5조)
-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공개 금지 (안 제6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 내지 제10조)
 - 구성 : 위원장(부교육감) 포함 7명 (위촉위원 3명, 당연직 위원 4명)
 -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이 신고내용의 당사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
- 보상금의 지급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다음 기준으로 함 (안 제11조)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백만원 이내

○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안 제12조 및 제13조)

-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도 가능

○ 보상금 지급 제외 (안 제14조)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3조에서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정하고,
- 안 제4조 부터 제5조에서 공익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 및 신분미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또한, 안 제7조 부터 제10조에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른 제반 규정을 명시하였고,

- 안 제11조 부터 제13조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14조 부터 제15조에서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 기준과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음.
-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제2조 제1호 및 제3호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5.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수정하여 공익신고 대상자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 골자

○ 제2조 제1호 를

1. “공무원등” 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장이 임용한 계약직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으로 전면수정 하고,

○ 제2조 제3호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일반도민을”를 “자를”로 일부수정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0. 5. 17.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수정하여 공익신고 대상자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수정사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 제1호 를

1. “공무원등” 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장이 임용한 계약직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으로 전면 수정하고,

○ 제2조 제3호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일반도민을” 를 “자를” 로 일부수정

3.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등"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장이 임용한 계약직원을 말한다.</p> <p>2. <생략></p> <p>3. "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일반도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장이 임용한 계약직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p> <p>2. <생략></p> <p>3. "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p>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5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5월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5월 17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을 변경(안 제2조)
 -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 변경 및 정원의 총수를 정함(안 제2조제1호)
- 교육위원회 의사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7명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05명 ⇒ 2,911명(안 제2조제2호)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추가(안 제4조)
 -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7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13명⇒7명)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 7. 1.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조직 명칭과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18명으로 변함이 없으며,
 -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과 정원을 종전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7명으로 변경 및 명시하고,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05명에서 2,911명으로 변경하였음.
- 또한, 정원관리 단위기관에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추가 명시하였고, 교

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로 2010년 8월 31일 까지 정원 (7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조례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정수를 13명에서 7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0.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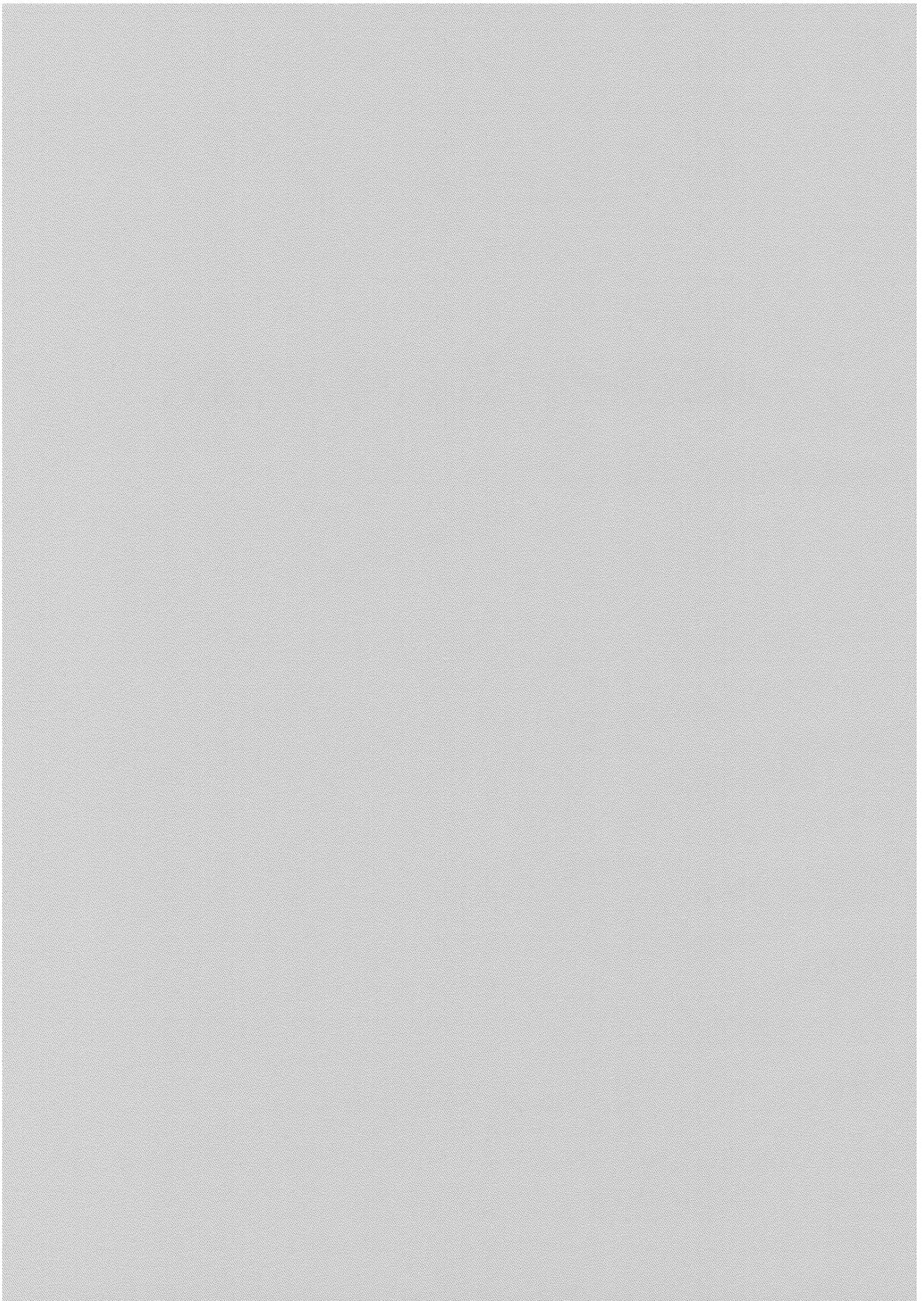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이상일
간사	성영용	成永龍
위원	김부웅	김부웅
	정무	정무

第24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01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13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5월 17일 (월요일) 14시 02분

議事日程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견
2. 간사선출의견
3. 의사일정결정의견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금에 관한조례안

審查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견
2. 간사선출의견
3. 의사일정결정의견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금에 관한조례안

(14시 02분 개의)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

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견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김부웅 교육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지금 나가 계시는 이상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잘 심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4시 04분)

● 위원장 이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성영용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영용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4시 05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정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7명을 도청으로 보내죠. 나머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직급별로 해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의사국에 있는 정원 직급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기획관리과장 박노화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2명, 5급 1명, 행정6급 3명, 행정7급 2명, 사무 1명, 속기 2명, 운전 2명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로 의사국 정원 7명을 배정하기로 도의회하고 지난 4월 7일 사전 협의공문이 저희들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배정하는 정원은 4급 1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사무 1명, 속기 2명 계 7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명은 4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운전 2명 6명은 저희들 교육청 본청이나 그 소속기관에 정원을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간사 성영용**

본청은 이해가 가는데 그 소속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 포함한 지역교육청하고 그 소속기관을 말합니다.

● **간사 성영용**

본 교육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상당한 능력 있고 우리 도교육청 전반 업무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과 교양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교육청에 파견이 된다 하더라도 또 남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도의회 사무처로 발령이 나는 것은 7월 1일자로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8월말까지 있다가 9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운영은 6월 30

(14시 13분)

일까지는 13명이 되고 나머지 잔류 인원 6명 가지고 이제 7월, 8월 두 달은 그렇게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안 제4조에 보면 공익신고 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신고자 본인이 부조리와 관련되는 경우는 7일로 이렇게 기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인이 부조리와 관련된 경우를 7일로 한다는 것은 본인이 무슨 부조리를 일으켰을 때에 7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본인의 행위를 7일로 제한한 것은 본인의 행위 신고기간을 최소화해 가지고 말하자면 증거 은폐랄지 증거 인멸이랄지 여러 가지 또는 심정의 변화랄지 등 등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 정무 위원

본인이 7일 이내에 신고했을 때 보상

을 해 주는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그렇죠.

● 정무 위원

본인이?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본인의 행위를 자진신고.

● 정무 위원

본인이 부조리했을 경우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 준다 그 얘기죠?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그렇습니다.

시일이 오래 가면 심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증거가 또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정한 것이 7일이죠.

● 정무 위원

제 얘기는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신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잘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그런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럿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조항을 넣어놔야지 대처를 하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 위원

처벌을 해도 거시기한테 보상을 해준다니까.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범일 경우에, 제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시일이 흐르고 나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일 이내로 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 정무 위원

처벌은 안하고? 만약에 중한 부조리를 했을 때에.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처벌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 정무 위원

보상도 해주고 처벌도 하고.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 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제2조제1항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건지?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따른 예를 들면 회수금이라든지 민사상의 배상청구금 등이 법인재산으로다 귀속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논란이 된다면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4개 교육청이 서울, 광주, 경기, 경남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제외했는데 만약에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법인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제외하고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똑같은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포함시켜도 관계가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 간사 성영용

본 위원도 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재정결함보조금을 준다든지 특별교부금

이 내려와서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해 준다든지 했을 때 당연히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 봐야지 그런 특권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제2조제3항에 공익신고자는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일반도민을 말한다 이래 했는데, 충청북도 도민을 얘기하는 건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일반도민이라고 하는 그 얘기에.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일반도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조례 자체가 우리 충청북도 단위 광역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도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다만 여기서 집행이 될 경우에 있어서 일반도민이라는 뜻은 국민, 시민, 주민 등 아주 포괄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예를 들면.....

● 김부웅 위원

주민, 일반주민.

● 간사 성영용

일반주민 또는 신고하는 자.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적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간사 성영용

그렇게 하고, 그 운영방안에 있어서의 뭐라고 그럴까 무분별한 신고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선량한 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모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좀더 철저히 운영해줘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말이 나오기 쉬운 부분이고.

요새 선거철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천의 어떤 의원이 업자들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타 의원도 모함을 하는데 그이도 들어갔다 그이도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요새 막 모함을 하고 다녀요, 본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본인이 어떻게 해명할 수가 있나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 중에 열심히 했는데도 모함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

시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알겠습니다.

적용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 간사 성영용

저기, 본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 심의가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를 하시는 거죠?

● 간사 성영용

네.

● 위원장 이상일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영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를 “공무원등”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나.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장이 임용한 계약직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전면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일반도민을”를 “자를”로 일부 수정하여,

공익신고 대상자와 공익신고자의 범

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용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0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그 동안 위원들께서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성영용,

위원 김부웅, 정무.

○ 출석공무원 : 4명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의사일정안(별첨 1)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10. 5. .

위원장 이 상 일 이 장 필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5. 17. (월) 14 : 00	<p>[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원장 선출의 건2. 간사 선출의 건3. 의사일정 결정의 건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충청북도교육청 공인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